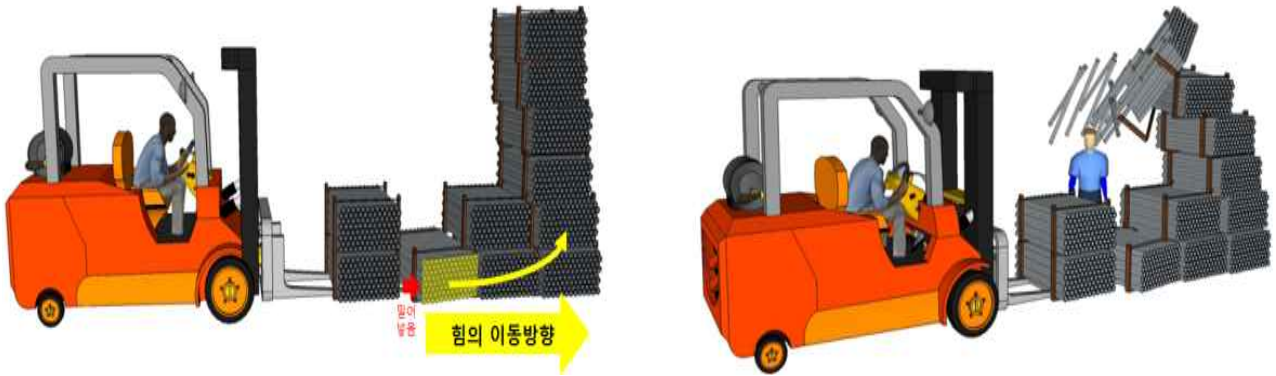


불균형하게 쌓여 있던 원형파이프에 깔림

재해개요

○○사업장 옥외에서 원형파이프(건설용 가설자재) 더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옮기고 정리하던 중 파이프 더미(6단, 2m)가 붕괴 되어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재해자가 깔려 사망함

재해관련사진



재해발생원인

○ 적재방법의 불량

- (적재방법) 화물 적재 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하나, 원형파이프 더미가 불균형한 상태로 적재되어 적재물이 불안정하게 한쪽으로 기울어 짐
- (전도방지조치 미실시) 적재물이 불안정하게 쌓여 넘어짐 위험이 있는 경우, 가벽을 설치하는 등 전도위험방지 조치를 미실시하였음
- (출입금지 조치 미실시)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장소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나 별도의 출입금지조치가 없었음

○ 지게차 무자격자 운행

- 7톤 지게차 무자격자에 의해 운행

○ 하역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

- 하역작업 시 위험예방대책과 지게차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않음

재해예방대책

○ 화물의 균형적재

- 건설용 가설자재 등 적재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적재물의 전도방지를 위하여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르게 적재

○ 전도위험방지 등 안전조치 실시

- 가벽 등 보조지지대를 사용해 견고하게 적재물을 지지하여 적재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고,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조치 및 출입통제인 배치 등의 조치 실시

○ 무자격자의 지게차 운전금지

- 3톤 이상의 지게차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운전

○ 하역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및 관리감독 철저

- 하역작업 시 적재되어 있는 짐의 붕괴나 그 밖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,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예방대책,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, 교육하여야 함